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78호**  
**2018. 10. 16.(화)**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차 례

### 입법예고(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773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774호) .....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775호) .....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776호) .....3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777호) .....4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780호) .....57

공									
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2. 제정이유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인구정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마.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새로운대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전화 : 042-608-6132, FAX : 042-608-3813, E-mail : choch8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 담당자 조창환(전화 : 042-608-61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주택·일자리·보육·복지·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 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홍보실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교육공동체과장, 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건행정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및 저출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구정책위원회 운영경비 및 교육·홍보 등 소요경비
  -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안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3. 비용추계 전제 : 계속사업(매년시행)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 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b>세입</b>	구비		8,980	8,980	8,980	8,980	8,980	44,900
<b>세출</b>	인구정책 시책지원		8,980	8,980	8,980	8,980	8,980	44,900

5.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위원회참석수당 : 70,000원×8인×4회 = 2,240천원
- 인구정책교육 강사수당 : 370,000원×1인×2회 = 740천원
-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 2,000원×3,000부 = 6,000천원

6.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b>의존 재원</b>	소계		-	-	-	-	-	-
	국비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8,980	8,980	8,980	8,980	8,980	8,980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협의사항 : 해당없음

9. 작 성 자 : 새로운대덕추진단장 홍영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 의안 소관 부서명 >

새로운대덕추진단	
담 당 자 연 락 처	조 창 환 (042) 608 - 6132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개정이유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고 등을 통한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8개동

의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나. 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의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함. (안 별표)

다. 부칙에서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명칭 사용한 조례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일괄 정비함(안 부칙).

###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

나. 예산조치: 예산 필요

다. 비용추계서: 별첨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8. 10. 16. ~ 11. 5. / 20일 이상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교육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전화 : 042-608-6513, FAX : 042-608-3822, E-mail : songs041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담당자 송수연  
(전화 : 042-608-6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

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1조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번호	기관명	소재지
1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2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972번길 92 (오정동)
3	대화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5길 10 (대화동)
4	회덕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76 (읍내동)
5	비래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 10 (비래동)
6	송촌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송촌동)
7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 47 (중리동)
8	법1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6 (법동)
9	법2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법동)
10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0 (신탄진동)
11	석봉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7번길 15 (석봉동)
12	덕암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104번길 60 (덕암동)
13	목상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7 (목상동)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u>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u>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소재지) 대전광역시 <u>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u>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p> <p>[별표] <u>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번호</th> <th style="width: 60%;">기관명</th> <th style="width: 30%;">소재지</th> </tr> </thead> <tbody> <tr><td>1</td><td>대덕구청</td><td rowspan="1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현행과 같음)</td></tr> <tr><td>2</td><td>오정동행정복지센터</td></tr> <tr><td>3</td><td><u>대화동주민센터</u></td></tr> <tr><td>4</td><td><u>회덕동주민센터</u></td></tr> <tr><td>5</td><td><u>비래동주민센터</u></td></tr> <tr><td>6</td><td><u>송촌동주민센터</u></td></tr> <tr><td>7</td><td><u>중리동주민센터</u></td></tr> <tr><td>8</td><td>법1동행정복지센터</td></tr> <tr><td>9</td><td>법2동행정복지센터</td></tr> <tr><td>10</td><td>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td></tr> <tr><td>11</td><td><u>석봉동주민센터</u></td></tr> <tr><td>12</td><td><u>덕암동주민센터</u></td></tr> <tr><td>13</td><td><u>목상동주민센터</u></td></tr> </tbody> </table>	번호	기관명	소재지	1	대덕구청	(현행과 같음)	2	오정동행정복지센터	3	<u>대화동주민센터</u>	4	<u>회덕동주민센터</u>	5	<u>비래동주민센터</u>	6	<u>송촌동주민센터</u>	7	<u>중리동주민센터</u>	8	법1동행정복지센터	9	법2동행정복지센터	10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11	<u>석봉동주민센터</u>	12	<u>덕암동주민센터</u>	13	<u>목상동주민센터</u>	<p><u>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u>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u> -----.</p> <p>제2조(소재지) -----<u>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u>-----.</p> <p>[별표] <u>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번호</th> <th style="width: 60%;">기관명</th> <th style="width: 30%;">소재지</th> </tr> </thead> <tbody> <tr><td>1</td><td>대덕구청</td><td rowspan="1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현행과 같음)</td></tr> <tr><td>2</td><td>오정동행정복지센터</td></tr> <tr><td>3</td><td><u>대화동행정복지센터</u></td></tr> <tr><td>4</td><td><u>회덕동행정복지센터</u></td></tr> <tr><td>5</td><td><u>비래동행정복지센터</u></td></tr> <tr><td>6</td><td><u>송촌동행정복지센터</u></td></tr> <tr><td>7</td><td><u>중리동행정복지센터</u></td></tr> <tr><td>8</td><td>법1동행정복지센터</td></tr> <tr><td>9</td><td>법2동행정복지센터</td></tr> <tr><td>10</td><td>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td></tr> <tr><td>11</td><td><u>석봉동행정복지센터</u></td></tr> <tr><td>12</td><td><u>덕암동행정복지센터</u></td></tr> <tr><td>13</td><td><u>목상동행정복지센터</u></td></tr> </tbody> </table>	번호	기관명	소재지	1	대덕구청	(현행과 같음)	2	오정동행정복지센터	3	<u>대화동행정복지센터</u>	4	<u>회덕동행정복지센터</u>	5	<u>비래동행정복지센터</u>	6	<u>송촌동행정복지센터</u>	7	<u>중리동행정복지센터</u>	8	법1동행정복지센터	9	법2동행정복지센터	10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11	<u>석봉동행정복지센터</u>	12	<u>덕암동행정복지센터</u>	13	<u>목상동행정복지센터</u>
번호	기관명	소재지																																																											
1	대덕구청	(현행과 같음)																																																											
2	오정동행정복지센터																																																												
3	<u>대화동주민센터</u>																																																												
4	<u>회덕동주민센터</u>																																																												
5	<u>비래동주민센터</u>																																																												
6	<u>송촌동주민센터</u>																																																												
7	<u>중리동주민센터</u>																																																												
8	법1동행정복지센터																																																												
9	법2동행정복지센터																																																												
10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11	<u>석봉동주민센터</u>																																																												
12	<u>덕암동주민센터</u>																																																												
13	<u>목상동주민센터</u>																																																												
번호	기관명	소재지																																																											
1	대덕구청	(현행과 같음)																																																											
2	오정동행정복지센터																																																												
3	<u>대화동행정복지센터</u>																																																												
4	<u>회덕동행정복지센터</u>																																																												
5	<u>비래동행정복지센터</u>																																																												
6	<u>송촌동행정복지센터</u>																																																												
7	<u>중리동행정복지센터</u>																																																												
8	법1동행정복지센터																																																												
9	법2동행정복지센터																																																												
10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11	<u>석봉동행정복지센터</u>																																																												
12	<u>덕암동행정복지센터</u>																																																												
13	<u>목상동행정복지센터</u>																																																												

# 비용추계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고 등을 통한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8개동(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함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 3. 비용추계의 내용

### 가. 비용추계 전제

- 8개동(대화동, 회덕동,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의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함

### 나. 비용추계 결과

- 8개동 × 2,000천원 = 16,000천원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 등 시설교체 비용

###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특별조정교부금) : 16,000천원

## 4. 작성자

- 교육공동체과장 박승원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공동체과	
담 당 자 연 락 처	송 수 연 042-608-6513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18.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고문변호사를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이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 규칙과 본 조례가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등의 내용을 삭제하여 각 자치법규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구

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및 자치법규 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
- 나.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정원, 해촉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다. 고문변호사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라. 고문료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전화 : 042-608-6062, FAX : 042-608-3811, E-mail : ksh056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김상희(전화 : 042-608-60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소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및 소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법률자문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 가. 불변기일도과
  - 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문료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홍보실	
담 당 자	김 상 희
연 락 처	(042) 608 - 6062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2018.3.27.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결과 공고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예술품등의 감정평가,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사. 매각대행 해제요청 및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
- 아. 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전화 : 042-608-6673, FAX : 042-608-3824, E-mail : pktj4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과 담당자 김태종 (전화 : 042-608-66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정하며, 전문매각기관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때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

관 신청서의 접수기한,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모집공고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심사로 하며, 징수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 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제5조(선정결과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 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법 제71조의2의 전문매각기관으로써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술품등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

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때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 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도 이를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1회 매각기일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예정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

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26.]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법 제71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27.]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3.27.]

**수수료**(제52조의3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공 매 진 행 단 계	수 수 료 율	최 저 수 수 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 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2018.3.27.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등을 매각하기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세입징수 결과 제출기한 연장의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나.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및 선정 신청을 규정함(안 제18조).

- 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라.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 마. 매각재산의 인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 바. 별지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무과

(전화 : 042-608-6673, FAX : 042-608-3824, E-mail : pktj4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무과 담당자 김태종 (전화 : 042-608-66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2.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영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재산의 인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제1항에 따른 물품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 제출서류

-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 신청자격 증명서류
-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	--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b>1. 인적 전문성</b>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b>2. 물적 전문성</b>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 업무 수행 능력 (50)	<b>3. 경매 횟수 등 실적</b>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 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 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b>4. 기타 수행능력</b>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b>합 계</b>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채납처분비					
합계					

끝.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4) 대금 납부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 설>

각기관의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신 설>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영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매각재산의 인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본조신설 2017.12.26.]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

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2. 제정이유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다. 가맹점의 지정 및 환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라. 기타 상품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1.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전화: 042-608-6924, F

AX: 042-608-3831, E-mail: pcs83do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 담당자 백지숙(전화: 042-608-69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역내순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대덕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구청장이 발행자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기관”과 같은 법률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을 말한다.
4. “개별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

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환전대행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11조의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업체, 가맹점,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관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 : 구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2. 개별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업무, 상품권 판매홍보 등 : 개별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

④ 구청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종류 및 권면 금액별로 발행량을 결정한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방식, 액면가액 및 발행금액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할인 및 수수료) ① 구청장은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각 1퍼센트 이내로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구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대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재고, 환전 현황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을 희망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지정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률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대덕구(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구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3.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덕구 내에 있지 않은 자
4.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생·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지정사항 등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개별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9조(가맹점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이 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지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가맹점이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1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대표자로 한정한다. 다만, 대표자가 환전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 환전을 대

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상품권의 훼손) ① 구청장은 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대덕구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구로 귀속한다.

제14조(상품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을 위한 비용, 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제3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판매
2.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의 지정
3.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지정의 취소

#### 4. 조례 제12조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제18조(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에너지경제과	
담당자 연락처	백지숙 042-608-6924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